##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65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주호영·고동진·김상훈

최은석 · 김기웅 · 김종양

이인선 · 김예지 · 권영세

이헌승 · 김재섭 · 김도읍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

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도 할 수 없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 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산주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맑은 물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녹색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개정).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56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세입으로 한다."를 "세입으로 하되, 징수액의 일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5호에따른 녹색자금의 재원으로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	③
청장등이 부과·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	
사업계정의 <u>세입으로 한다.</u> 다	<u>세입으로 하되, 징</u>
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액의 일부는 「산림자원의 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	조제3항제5호에 따른 녹색자금
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의 재원으로 한다
으로 한다.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